



제 432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제45조의 제목에 약물 운전의 금지를 명시 등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5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의 벌칙 수준을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
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처리(2025.03.13.)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에서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과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의 금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문의 제목과 문구 상 순위에서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정법률 조문에서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를」에 따른 마약류(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당 시행규칙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조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법률 제45조제1항에 위반행위 유형 순서를 과로, 질병, 약물의 순서에서 약물을 가장 먼저 명시하며(과로, 질병, 약물 → 약물, 과로, 질병), 약물의 종류 중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환각물질을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026. 4. 2. 시행예정법률	(참고) 2026. 7. 1. 시행예정법률	개 정 안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1. 개정, 2026. 4. 2. 시행예정) 제45조(과로한 때 등 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 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 병 또는 약물(「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률 제2124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25. 12. 30. 개정, 2026. 7. 1. 시행예정) 제45조(과로한 때 등 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 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노면전차 의 운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 병 또는 약물의 영 향과 그 밖의 사유 로 정상적으로 운전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1. 개정, 2026. 4. 2. 시행예정) 제45조(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 전 금지) ① ----- ----- ----- ----- ----- -----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

2026. 4. 2. 시행예정법률	(참고) 2026. 7. 1. 시행예정법률	개 정 안
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로, 질병의 영향과-----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2026. 4. 2. 시행예정법률	(참고) 2026. 7. 1. 시행예정법률	개 정 안
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4호(2026. 4. 2. 시행예정)로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만 포함했으나, 2025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경찰관의 약물 측정의 근거에 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음.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

2025년 4월 1일 개정 전 법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2026. 4. 2. 시행예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을 통해 조제목에 약물 운전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의료용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률에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2025년 4월 1일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약물 운전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된 것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조제목에 약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제목(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중 ‘약물의 영향’ 부분이 이어서 오는 ‘과로한 때’ 부분과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 제목을 (약물을 복용하거나¹⁾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에서 약물을 가장 먼저 명시하여 약물, 과로 또는 질병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약물 운전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순서를 수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해당 내용을 찾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45조제1항은 약물에 대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을 삭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46호로 개정될 때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나목²⁾의 약물의 정의조항에 이미

1) 약물 복용이라는 표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음.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유형을 ‘약물’ 우선순위로 조정(과로·질병·약물 → 약물·과로·질병)하는 것은, 최근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이 금지 행위의 핵심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환각물질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2025. 12. 30.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제2조제35호나목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